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 직매입·특약매입 등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 실태파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개 업체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5. 2. 11. ~ 2025. 3. 13.
- **조사방식** :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온라인)
- **조사대상** : (유통업체) 11개 업체 139개 유통브랜드, (납품업체) 식품패션산업협회 회원사
* ①백화점 ②면세점, ③TV홈쇼핑, ④T-커머스, ⑤대형마트, ⑥편의점, ⑦SSM, ⑧복합쇼핑몰, ⑨아울렛, ⑩온라인쇼핑몰, ⑪전문판매점
- **조사내용** : ▲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 ▲대금지급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유통업체·납품업체 의견, ▲대금 정산기한 변경 사례 등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이하 '특약매입 등')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직매입)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 개정안이 발의('24.10.28.)되었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특약매입등: '11년~, 직매입: '21년~).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 자금유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통적 소매업의 **법정 대금지급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및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제30조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업체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는 한편,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대금정산기한 실태조사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균 (044-200-4960)
		담당자	사무관	김영찬 (044-200-4961)



- (조사대상) 11개 업체 139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납품업체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식품산업협회 및 패션산업협회 회원사**에도 납품업체용 조사표를 별도 송부할 계획이다.

* 152개 유통브랜드 중 동일 브랜드가 복수 업체에 중복 포함되어있는 13개 브랜드 제외

< 조사대상 >

유통업체	브랜드수	대표법인	유통업체	브랜드수	대표법인
백화점	12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SSM	6	이마트에브리데이, 탑마트
면세점	6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복합쇼핑몰	14	스타필드, HDC아이파크몰
TV홈쇼핑	7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아울렛	14	롯데아울렛, 현대아울렛
T-커머스	10	SK스토아, 신세계쇼핑	온라인쇼핑몰	56	쿠팡, SSG.COM
대형마트	8	이마트, 홈플러스	전문판매점	13	다이소, 올리브영
편의점	6	GS25, CU	11개 유통업체 139개 유통브랜드		

- (조사 기간 및 방식)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며, 공문을 수령한 조사대상 업체가 조사표를 작성해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 근거규정 :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

- (조사 내용)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업체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기한 관련 **업계 의견**, **대금지급기한 변경 사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 (향후계획)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응답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조사 결과를 올해 5월경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